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7 발의연월일: 2024. 8. 13.

발 의 자:조배숙·백종헌·김기현

강선영・성일종・고동진

곽규택 • 박준태 • 김승수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토킹행위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피해가 상당하며, 행위의 특성상 강력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인식에서 국내외적으로 스토킹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개입과 방지책이 마련되기 시작함. 그 과정에서 독일과 미국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행위의 특별한위험성을 고려하여 성인에 대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통해범죄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였음.

우리나라도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시행되었고, 이후 개정과정에서 미성 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음.

그러나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

특히 성착취 목적 그루밍이나 강간 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일 경우 성인 대상 범죄보다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 런되어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구분 없이 일괄적으 로 법정형이 적용됨.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자 함.

또한 단순 스토킹범죄를 넘어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들과 결과적가중법 규정의 확충을 위해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 또는 상해에이른 경우 등을 가중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사람
-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스토킹범죄의 치사상)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생 략)	제18조(스토킹범죄) ① (현행과		
	같음)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u>해당하는</u>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1.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u><신 설></u>	2. 미성년자에 대하여 스토킹범		
	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		
	<u>람</u>		
<u><신 설></u>	제18조의2(스토킹범죄의 치사상)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u>징역에 처한다.</u>		